

物價管理와 油價政策方向



金仁浩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I. 物價와 油價

1. 油價의 物價에 미치는 영향

石油類 제품의 가격은 他工產品에 비하여 물가에 직접, 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도매물가중 石油類 제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36.2/1000으로서 이는 石油類 제품가격이 10% 상승하였을 경우, 기타 가격의 변동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都賣物價가 1.36% 상승하게 됨을 의미한다.

油價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他工產品의 원가에 변동을 가져옴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게 된다. 예컨대, 油價의 상승은 연료유의 가격상승을 통하여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며 전기요금의 상승은 다시 대다수의 공산품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油價의 상승은 나프타溜分가격상승을 통하여 원유비중만큼 모든 석유화학제품가격을 상승하게 한다.

이러한 油價의 전산업가격에 파급되는 간접효과는 韓銀의 產業聯關分析結果에 따르면, 油價 10% 상승시 약 2.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油價는 직접·간접으로 도매물가에 지

油價 10%上昇時 도매물가영향

(單位 : %P)

物價影響	直 接 影 響	間 接 影 響	合 計
	1.36	2.06	3.42
備 考	揮發油 0.19 輕油 0.25 B-C油 0.58 나프타 0.09	電力 0.13 나프타溜分 0.06 合成樹脂 0.05 樹脂製品 0.05	

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工產品의 원가변동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油價의 안정이 경제안정의 가장 중요한 關鍵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油價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리나라 物價上昇과 油價變動 추이

과거 우리나라 物價上昇推移를 살펴보면 60년대 개발초기에는 국내자원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저축이 극히 부족한 여건하에서 고도성장 추진은 불가피하게 通貨를 팽창시켜 초과수요를 유발하였

年度別 油價 및 都賣物價上昇率 推移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油 價	183.5	29.5	7.1	1.5	3.8	38.4	105.3	34.9	7.8	△ 5.1	△ 1.9
都賣物價	42.1	26.5	12.2	9.0	11.6	18.8	38.9	20.4	4.7	0.2	0.7

으며, 또한 農水產部門의 상대적인 저성장과 天候條件의 변화에 기인한 生产공급의 경직성으로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여 物價가 크게 상승하였다.

70년대에 들어서는 이와 같은 초과수요압력 및 農水產物 수급불안정에 따른 물가상승요인 이외에 73~74년도의 제1차 石油波動, 79~80년도의 제2차 石油波動과 산업연관구조의 후진성 및 대외의존도 심화등 경제구조의 취약성에 따른 해외인플레이 요인의 자체흡수력 미약으로 油價上昇에 따른 비용상승압력이 국내물가상승을 더욱 가속화시켜 연평균 20%에 달하는 높은 물가상승을 가져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물가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2차 石油波動의 충격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세를 회복하여 82년 이후부터는 고도성장과 아울러 제자리 物價의 획기적인 물가안정을 이루 함으로써 과거 만성적 인플레이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低物價 및 고도성장 기반구축으로 세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경험을 살펴볼 때, 통화증가, 농수산물 가격상승 등 국내요인이 物價上昇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으나, 대외의존도, 특히 에너지수입의존도가 극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油價變動이 국내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안정의 우선적 과제는 통화, 재정, 金利, 換率等 주요정책변수의 안정적 운용,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공공 요금의 안정적 관리등 국내물가상승요인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범국민적 안정화 노력과 병행하여 油價·해외원자재 가격과 같은 해외 물가상승요인의 국내파급 영향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겠다.

이러한 안정화 노력없이는 국제경쟁력 약화로 수출부진을 초래하여 안정성장을 어렵게 할 뿐만아니

라, 先進經濟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리경제의 각종 비능률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키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결과가 될 것이다.

II. 最近 油價管理與件 및 對策

1. 最近 原油價動向

80년 제2차 石油波動 이후 국제석유시황은 세계경기 부진의 확산, 에너지 소비절약 및 대체에너지개발촉진등에 따라 세계석유수요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OPEC국가의 석유생산비중 감소, 非OPEC국가의 석유공급과잉현상 지속등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사우디 輕質油공식가 기준으로 81, 82년 34달러/B까지 이르렀던 油價는 최근 28달러/B까지 하락하였으며, 아직도 公式價가 現物價 또는 精製價値에 비교하여 과대 책정되어 있어 향후 2~3년동안은 추가하락 가능성이 예상되는 등 극히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原油價의 하락은 그간 지속적인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가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83년 이후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2. 最近油價對策 및 向後課題

특히 83년 3월 OPEC原油價가 대폭 하락(4.53 \$/B)함에 따라 국내유가인하요인이 16%정도 발생하였으나, 향후 油價上昇 완충을 통한 장기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중 30%만 国內油價引下에 반영하여 4.8% 인하하고 나머지 70%는 關稅 5% 신설, 석유안정기금 1.7 \$/B 징수로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4월 현재 國際原油價는 다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換率이 83. 12 油價

OPEC公式價 變動率 推移

(單位：前年對比，%）

	1981	1982	1983	1984
달러表示公式價	13.2	3.1	△13.6	△ 1.7
원貨表示公式價	20.1	10.3	△ 8.2	2.3

調整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原油價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약 5%의 국내 유가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정유사의 부담을 적기에 해소하면서 물가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油價調整 대신 關稅를 5%에서 1%로, 석유안정기금을 1.25 \$/B에서 0.50 \$/B로 인하하는 非價格政策手段을 지난 4월 14일에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4.14油價對策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간 추가로 4.5% 상승하여 국제원유가 및 국제금리하락분을 상쇄하고도 8월말 현재 1% 내외의 油價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최근에 이르러 國際原油價 하락에도 불구하고 換率上昇에 따라 국내유가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국내물가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첫째, 實勢化된 현재의 환율수준하에서 국제통화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환율의 안정적 운용과

둘째, 장기계약도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현물시장의 활용등 국제석유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에 나감으로써 가급적 원유도입단가를 낮추고,

세째, 原油備蓄은 84년 수준을 유지하고 民間在庫는 정유사의 자율이 맡겨 시장원리에 따른 적정재고수준으로 유도하며,

네째, 貨加工수출증대를 통한 정유사 이익을 제고하고 정유회사의 경영합리화 및 석유유통개선 방안이 계속 보완 발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II. 油價管理制度의 改善方向

1. 現行 油價管理 制度의 問題點

油價는 64년 국내석유제품 생산이래 줄곧 정부의 완전통제가격으로서 工場渡 이하 소비자가격까지 유통단계별로 최고가격으로 지정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油價의 통제를 통하여 몇개 정유사에 의

하여 寡占되어 있는 정유시장의 가격 부당인상을 방지하고 가격조정폭 및 시기 조정, 관세, 기금 등 타 정책수단의 활용 등으로 價格管理가 용이함은 물론 특정 유종의 低價維持로 산업정책 및 민생안정정책 수행이 가능하였고 消費地 精製主義를 기조로 한 수출입 규제로 석유수급안정에 기여한 바가 컸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유5사의 原價를 加重平均하여 가격을 결정함에 따른 시장경쟁 원리의 제한으로 정유사 경영합리화 및 원가절감誘引이 부족하고 가격조정의 경직성으로 장기 수급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油種間 가격구조 왜곡현상이 초래되는 등 정부의 직접규제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점진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는 일반공산품가격관리 방향과 마찬가지로 石油類 제품가격도 점차 자율화 방향으로 추진하여 국내외의 자율경쟁에 의한 시장가격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의 확립이 있어야 하며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2. 油價自律化 方向

油價自律化 실시의 목적은 정유산업의 경영합리화 및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요자에 대하여 해외경쟁시장에서 획득가능한 수준으로 석유류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주요경제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油價制度의 정착을 밀받침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국내산업 활동의 보호, 경제운용의 전반적 자율화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自律化方向과 관련하여 국내외여건을 보면 종래 공급부족 및 가격의 불안으로 불안정하였던 세계석유시장이 안정되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產油國의 Down Stream 진출에 따라 석유제품의 가격 및 수급도 안정될 전망이며, 특히 韓國과 日本을 비롯한 東南아시아는 中共의 산유국 부상으로 消費地精製主義 퇴조에 따른 정유업의 영업 전략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민간주도 경제운용의 확대, 工產品價格의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의 전환,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수입자유화폭 증대등 전반적인 자율화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油價自律化를 시행하기에 앞서 우선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정부의 직접적인 수급조절기능 없이도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의하여 국내석유류 제품의 수급균형 유지가 가능한가의 여부와

둘째, 특종유종의 低價維持를 탈피할 경우 산업정책 등 타정책 목표 추진에 대한 정부의 결단과

세째, 油價自律화의 수단으로서 원유도입으로부터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原油를 비롯한 제품수입의 자유화와 함께 精油產業에의 신규참입 자유화가 전제조건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네째,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제원유시장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원유확보의 경직성과 국제원유시장의 가변성을 간파할 수 없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원유도입선 다양화등 정책목표와 연계된 원유도입이 필요하고 消費地 精製主義도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 안보측면에서 기조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제약조건이 아울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3. 換率連動制 검토

이상의 관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換率連動制을 살펴보기로 한다.

換率連動制은 국내유가를 환율변동에 따라 연동조정하여 그 조정요인을 즉시 반영함으로써 인상요인 누적시 油價의 대폭인상에 따른 물가충격을 완화하고 유가인상의 자연에 따른 精油社의 자금압

박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의한 장기수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油價의 換率連動制 취지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첫째, 油價는 환율이외에도 국제원유가 국제금리등 제비용요인과 판매수익 변동 등 수익의 증감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격결정 원리상 타당할 것이며,

둘째, 換率連動制 실시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 국내유가 조정이 불가피해짐으로써 물가자극 및 물가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째, 또한 換率連動制는 환율상승에 의한 가격인상요인을 전부 인정함으로써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상승요인의 부분적 흡수를 유도하는 현행 공산품가격 관리시책에 배치될 뿐만아니라, 비용요인을 자동적으로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는데 대한 국민, 타공산품업계, 정부간의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째, 환율의 지속적 상승과 주요정책변수운용의 부분적 전환으로 물가관리 애로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換率連動제의 실시는 시기상 적절치 못하고

다섯째, 가격조정 시점 및 조정폭의 사전예측 가능으로 조정시점을 전후하여 일시적 수급혼란 야기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精油業界의 경쟁체제가 갖추어진 상황하에서 換率連動제를 油價自律화의 단계로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유가관리 제도의 개선방향을 油價의 실질적 자율화에 두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

정직앞에 불신없고

공정앞에 불평없다